



제 424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전·사후영향조사 위탁기관 확대 및 비용지원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7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	3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지원	9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8.
3. 회 부 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는 절차(이하 “사전·사후영향조사”라 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사전·사후영향조사 수요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로 인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사후영향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사후영향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제8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u>1.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u> <u>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u> <u>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u> <u>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u>

④ ~ ⑥ (생략)	정하는 기관·단체·협회
<신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 까지와 같음)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생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위탁기관 범위 확대

- 수산자원조성은 일정 수역에 어초, 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¹⁾를 뜻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뜻함²⁾. 현재 바다숲 설치, 수산자원증대, 수산종자방류, 인공어초 설치 등이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1) 제2조(정의)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2)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표] 주요 수산자원조성사업 유형

구 분	사업목적	사업방식	비고
바다숲 조성	○ 목적: <u>해조류 이식, 갯녹음 제거</u> 등을 통해 수산생물의 서식처 제공 및 바다생태계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지자체 또는 민간 → (위탁) 수산자원공단 ○ 기간: '09년~계속 ○ 예산: '25년 국비 278.2억원	
수산자원 증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 목적: 수산자원 회복·관리가 필요한 품종의 <u>산란·서식장을 조성</u> 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	○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지자체 → (위탁) 수산자원공단 ○ 기간: '15년~계속 ○ 예산: '25년 국비 106.8억원	
수산종자 방류	○ 목적: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건강한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및 어업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주체: 지자체 자체수행 ○ 기간: '86~계속 * '20년부터 지방이양	지방이양 ('20~)
인공어초 시설	○ 목적: 수중에 자연암반과 유사한 인공 암반의 제작·시설을 통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제공	○ 사업주체: 지자체 자체수행 ○ 기간: '71~계속 * '20년부터 지방이양	지방이양 ('20~)

*자료: 해양수산부

현행법 제41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행정관청”이라 함)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 전후로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이하 “사전·사후영향조사”라 함)하여야 하는데³⁾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근거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의 기관·단체·협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음.

3)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이하 “사전·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4) 사전·사후영향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참고자료1] 참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에 대상 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해양환경 및 해저지형, 수산자원추정량 등의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성사업 시행 후 12~24개월 내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 제61조는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법률 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를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수산물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 같은 사전·사후영향조사의 업무위탁기관을 기존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관 확대를 통해 사전·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위탁기관 규정 변화

현행법	개정안
(법 제61조)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 (시행규칙 제50조) ○ 국립수산물과학원 ○ 한국수산물협회 ○ 한국어촌어항공단	(안 제41조) ○ 한국수산자원공단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

*주: 밑줄친 부분은 개정안에서 법률로 새로 추가되는 기관

□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에 대한 다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사전·사후영향조사는 해양 구조물 설치 시 거쳐야 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대체하는 것으로⁵⁾, 그 조사항목이 대상해역 인접지역의 변화,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의 변화, 수산자원량의 변화를 포함하는 등 상당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이므로,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또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현행법은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에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 위탁기관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구조이며,

조문체계상으로도 현행법 제60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문을, 제61조에는 행정관청의 사업 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을 두어 ‘권한의 위임 → 업무의 위탁’ 순으로 규정하는 통상적인 입법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⁶⁾,

5)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41조가 아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61조를 개정하거나, 제61조에 따른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령체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위탁업무기관을 확대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물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 지원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뜻함.

-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제2024-15호, 2024.2.27.)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총 89개소임⁷⁾.

개정안은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⁸⁾ 등 자료를 보면, 바다숲조성·수산자원증대·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필요한 영향조사의 평균단가는 약 1억 7,800만원이고,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필요한 영향조사의 평균단가는 약 4,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⁹⁾,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7)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8)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번호 22082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025.3.31.

9)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2024년 설계용역을 통해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함.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5년간 약 274억 2,5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¹⁰⁾

[표] 사전·사후영향조사 평균단가

(단위: 천원)

사업 유형	조사 유형	조사단가
바다숲/ 수산자원증대/ 인공어초	사전영향조사	89,201
	사후영향조사	89,201
수산종자방류	사전영향조사	4,999
	사후영향조사	37,371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¹¹⁾,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정상황이 더욱 열악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사후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는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수산자원조성사업 중 수산종자 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2020년 지방사무로 이양된 것¹²⁾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

10)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p.7 /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참고자료3] 참조

11)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가장 높은 서울이 74.0%, 가장 낮은 전북이 23.5%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2024년도)>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3.3	74.0	45.1	44.3	49.6	40.7	41.7	46.3	57.5	55.1	25.2	30.4	32.4	23.5	24.4	24.6	33.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12) 정부는 2018년 군특회계 사업인 ‘어업기반정비사업’(인공어초, 수산종자 방류 사업 포함)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20년부터 인공어초사업과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상세한 내용은 ☞ [참고자료] 참조

당 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수산 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받는 것 외에는 업무적인 관리나 개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 등의 교부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자체의 책임 하에 추진·수행되는 사업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이 지방에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이양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는 점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조사비용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선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방자치분권의 취지 등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다양한 특례 규정¹³⁾이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¹⁴⁾상에 포괄적인 지원 규정이 있는 점도 참고할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8조(생활 환경·경관의 개선),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등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1

사전·사후영향조사 관련 참고자료

□ 사전·사후영향조사 도입 배경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56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협의·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시행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사전·사후영향조사 개요

-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 (주체)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
 -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내용)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 대상 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해양환경 및 해저지형, 수산자원추정량 등의 사전영향조사 실시, 조성사업 시행 후 12~24개월 이내 사후영향조사를 실시
 -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 (위탁기관) 법령에 따라 ①한국수산자원공단, ②국립수산과학원, ③한국수산회, ④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가능

* 사전영향조사(사후영향조사 시행일 미도래)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조달청 나라장터)

< 수산자원의 조성 사업 등의 위탁 관련 법령 >

구 분	내 용
법률 제61조 (사업 등의 위탁 근거)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1조 (위탁업무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 12. (생략)
시행규칙 제50조 (위탁기관 범위)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 조사항목별 공단 수행 현황

- (조사항목) 대상해역 인접지역의 개황의 변화,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의 변화, 수산자원량 변화
- (수행형태) 공단 자체수행 또는 전문용역(ENG, 수로조사) 위탁 수행

구분	세부 조사항목	발주 형태
1. 대상해역 인접지역의 개황의 변화	어업실태,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현황, 사업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인접 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 배출현황, 사업지 주변 과거 5년 이내 개발현황, 그밖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직접수행 또는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변화	해양물리, 해양화학, 부유생태계, 퇴적물(입도분석), 해저지형(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학술연구용역 또는 엔지니어링(해양),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3. 수산자원량 변화	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직접조사), 저서생물상조사(해조류, 무척추동물, 먹이생물 등), 어획통계조사(간접조사), 위판현황조사(간접조사), 현지조사(간접조사)	직접수행 또는 엔지니어링(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참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현황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참고 3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산출 세부내역

□ 사전·사후영향조사 소요비용(위탁시) 등

○ 사전·사후영향조사 평균단가(단위: 천 원)

- (바다숲, 수산자원증대, 인공어초) 178,402천원(사전 89,201, 사후 89,201)
- (수산종자방류) 42,370천원(사전 4,999, 사후 37,371)

사업 유형	조사 유형	조사단가	상세 내역
바다숲/ 수산자원증대/ 인공어초	사전영향조사	89,201	인건비 27,676 + 경비 9,921 + 제경비 30,444 + 기술료 11,624 + 공제료 1,427 + 부가세 8,109
	사후영향조사	89,201	
수산종자방류	사전영향조사	4,999	인건비 3,663 + 경비 236 + 관리비 233 + 이윤 413 + 부가세 454
	사후영향조사	37,371	

※ 평균단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2024년 설계용역을 통해 산출된 단가

○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대상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연 평균)

(단위: 개소, 백만원)

사업 유형	유형별 조사비용	결과
바다숲	사업 수('22~'25년 평균)	6
	사전영향조사 단가	89
	사후영향조사 단가	89
	소계	1,068
수산자원증대	사업 수('22~'25년 평균)	2
	사전영향조사 단가	89
	사후영향조사 단가	89
	소계	356
수산종자방류	사업 수('22~'25년 평균)	70
	사전영향조사 단가	5
	사후영향조사 단가	37
	소계	2,940
인공어초	사업 수('22~'25년 평균)	14
	사전영향조사 단가	89
	사후영향조사 단가	89
	소계	2,492
합계		6,856

※ 자료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